

# 예산총칙

2025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00,048,433	6,001,453
일반회계	195,272,665	5,858,180
특별회계	4,775,768	143,273
기타특별회계	4,775,768	143,273
의료급여기금	169,753	5,093
주거환경개선사업	32,391	972
주차장	4,507,248	135,217
지하수관리	42,376	1,271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24,000	72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안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156,276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